

# 표준 통계 용어 정의

제 1 집

## 표준 통계용어정의 발간에 즈음하여

이 책은 통계용어의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중 사용빈도가 많고 사용상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발췌 정의하여 표준화한 표준통계용어 제1집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통계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통계가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사용되는 용어의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그중에는 동일한 용어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통계를 작성하는 것 뿐 아니라 이용하는 데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에서는 통계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통계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74년부터 통계용어의 표준화 작업을 서두렀습니다만 같은 용어라도 조사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의 경우 모든 통계조사를 만족시키는 용어의 개념 설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통계가 사회적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이며 타용어와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통계작성기관은 본 표준용어를 따라 작성하고 예외사항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본 제1집을 작성하는데 도와주신 각 관계 기관의 제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다른용어의 표준화에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75. 1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장 신 규

## 통계용어의 표준화원칙

통계용어는 정식화된 일반적 개념으로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통계조사마다 그 조사목적에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설정되는 것이므로 실제의 경우 모든 통계조사에 공통되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통계가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하여서는 사용되는 용어가 보편적일 것,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 타용어와 비교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보편성

통계용어는 일반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편적이라함은 일반성, 용이성 및 상식적일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용어의 보편성 요구는 통계가 일반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되고 이용되는 것이므로 통계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일차적 요구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보편화되지 않은 특수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사원 및 피조사자의 인식을 곤란케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노력을 부담시키며 나아가 통계조사 그 자체를 그릇칠 수도 있으며 통계자료 이용자에게도 자료의 이용곤란은 물론 통계적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통계용어는 학문적인 개념과도 일치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통계가 통계학을 기초로하여 작성되느니 만큼 보편성에 치

중한 나머지 학문적 개념과 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학을 밑받침으로한 통계의 전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계가 제사회과학분야의 실질적 도구로서 이용되느니만큼 자료이용의 학술적 접근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 나. 구체성

통계용어는 구체성을 지녀야 한다. 구체성이라함은 그 뜻이 명확하여 일의적 해석을 가할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용어가 추상적인 결과로 인하여 자기 임의의 주관적 판단을 가할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계수화에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통계의 의의가 없게되며 통계조사과정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게 될뿐만 아니라 따라서 조사결과외 목적부합성을 잃게된다.

#### 다. 비교성

통계용어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각종 통계조사에서 사용되는 동류 내지 기타 통계용어와도 비교 가능하도록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 목 차

1. 가계소득 및 비용지출 .....	11
(1) 가계소득 .....	11
(2) 가계비용지출 .....	12
(3) 가계소비지출 .....	12
(4) 가계비소비지출 .....	12
2. 가 구 .....	13
(5) 가 구 .....	13
(6) 보통가구 .....	13
(7) 단독가구 .....	13
3. 가구원 및 가구주 .....	14
(8) 가구원 .....	14
(9) 가구주 .....	14
4. 가족 및 핵가족 .....	14
(10) 가 족 .....	14
(11) 핵가족 .....	14
5. 거 처 .....	14
(12) 거 처 .....	15
(13) 수 택 .....	16
(14) 일반주택 .....	16
(15) 단독주택 .....	16
(16) 연립주택 .....	17

(17) 아파트 .....	17
(18) 비거주용 영구 건물내의 주택 .....	17
(19) 주택이외의 거처 .....	17
(20)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	17
(21) 집단시설 .....	18
(22) 임시수용시설 .....	18
(23) 임시주택 .....	18
6.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	18
(24) 경제활동인구 .....	19
(25) 취업자 .....	19
(26) 일시휴직 .....	19
(27) 실업자 .....	20
(28) 신규실업자 .....	20
(29) 비경제활동인구 .....	20
(30) 가사자 .....	21
(31) 학생 .....	21
(32) 연로자 .....	21
(33) 상병자 .....	21
(34) 불모소득자 .....	21
(35)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	21
7. 교육정도 .....	22
(36) 교육정도 .....	22
(37) 취 학 .....	22
(38) 불취학 .....	22

(39) 재 학	22
8 기술자 및 기능공	22
(40) 기술자	23
(41) 기술공	23
(42) 기능공	24
9. 농 업	25
(43) 농업활동	25
(44) 농업사업체	25
(45) 농업경영자	26
(46) 농 가	26
(47) 농업종사자가구	26
10. 배우관계	26
(48) 배우관계	26
(49) 미 혼	26
(50) 유배우	26
(51) 사 별	27
(52) 이 혼	27
11. 어 업	27
(53) 어업활동	27
(54) 어업사업체	28
(55) 어 가	28
(56) 어업종사자가구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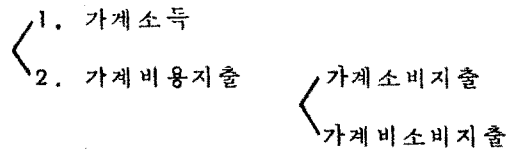
12. 원재료 및 최종제품 .....	29
(57) 원재료 .....	29
(58) 소원재료 .....	29
(59) 제품원재료 .....	29
(60) 구성부품 .....	29
(61) 중간제품 (반성재) .....	30
(62) 보조재료 .....	30
(63) 최종제품 .....	30
13. 임 금 .....	31
(64) 임금과 급료 .....	31
(65) 직접임금과 급료 .....	31
(66) 근로소득 .....	31
(67) 피고용자 보수 .....	32
(68) 노동비용 .....	32
(69) 현물임금과 급료 .....	33
(70) 임금율 .....	34
14. 종사자 .....	34
(71) 종사자의 지위 .....	34
(72) 고용자 .....	35
(73) 단독자영 종사자 .....	35
(74) 무급가족 종사자 .....	35
(75) 피고용자 .....	35
(76) 종업원 .....	35
(77) 자영 종사자 .....	36



(78) 생산종업원 .....	36
15. 주가구 및 동거가구 .....	37
(79) 주가구 .....	37
(80) 동거가구 .....	37
16. 출생, 사망 및 관련개념 .....	38
(81) 출생 .....	36
(82) 사망 .....	38
(83) 태아사망 .....	38
(84) 사산 .....	39
(85) 유산 .....	39
(86) 사인 .....	39
(87) 원사인 .....	39
(88) 혼인취소 .....	40
(89) 입양 .....	40
(90) 적출 .....	40
(91) 인지 .....	40
(92) 총출생아수 .....	40
(93) 생존아수 .....	40
17. 출생지 및 거주지 .....	41
(94) 출생지 .....	41
(95) 상주지 .....	41
(96) 발견지 .....	41
(97) 전거주지 .....	41

18. 취업시간 .....	41
(98) 취업시간 .....	41
(99) 정상취업시간 .....	41
(100) 실제취업시간 .....	42
19. 기타 개념 .....	42
(101) 도시 .....	42
(102) 문맹자 .....	43
(103) 방 .....	43
(104) 준가구 .....	43
(105) 중화학공업 .....	43
(106) 직업 .....	45

## 1. 가계소득 및 비용지출



### (1) 가계소득 (家計所得 Household Income)

일반적으로 가구 또는 가구원이 일정기간중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받는 현금과 현물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가. 피고용자의 임금과 급여 및 기타 고용자로부터 받는 관련수입

나. 자영종사자의 순소득

다. 사업이윤

라. 개인투자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마. 특허사용료

바. 구 전

사. 상속 또는 신탁기금에서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받는 지급금.

아. 현물소득 (현물임금,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또는 고용자가구 (동업자포함)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화 및 서어비스, 동일가구에서 생산하고 소비한 품목의 가액)  
피고용자가 가구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고용자 (또는 사업체)로부터 양도가격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어비스의

양도가액은 현물소득으로 간주하며 순 자가평가액, 무상·유 주택의 조임대 평가액도 현물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 가계비용지출 (家計費用支出 Household Expenditure)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전체 또는 가구원이 지출한 소비지출과 직접세, 사회보장분담금, 보험료 및 이전과 같은 비용성적의 지출을 말하며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금융거래상의 지출은 제외된다.

(3) 가계소비지출 (家計消費支出.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

가구 및 가구원이 소비목적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모든 현금지출과 현물소득으로 받아서 가구에서 소비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가액을 말한다.

가. 공급된 재화 및 서서비스를 위한 가구의 지출

나. 재화 및 서서비스의 소비(사용)에 관련된 지출

( 교육보전 및 법률서서비스에 대한 가구의 지출 )

다. 주택점유에 관련된 요금

라. 운전면허, 가구전용 자가용 등록수수료, 항공여행수수료,

텔레비죤시청료 및 유사수수료

마. 자가생산물의 자가소비액

바. 소유점유주택의 순임대 평가액

사. 무료점유주택의 조임대 평가액

(4) 가계 비소비지출 (家計非消費支出, Household Non-Consumption Expenditure)

가계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가구 또는 가구원이 지출한 비용지출을 말한다.

가. 소득세 및 기타 직접세

나. 연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및 유사보험료

다. 송금액, 증여액 및 유사이전금

2. 가 구

- 1. 보통가구
- 2. 단독가구

(5) 가구 (家口, Household)

일인 또는 이인 이상이 일반적으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한다.

(6) 보통가구 (普通家口, Ordinary Household)

이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통상 혈연관계인으로 결합된 가구를 말한다.

(7) 단독가구 (單独家口, One -Person Household)

일인이 타가구와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위를 말한다.

### 3. 가구원 및 가구주

(8) 가구원 (家口員, Member of Household)

가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말하며, 속식을 같이 하는 하숙인 및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

(9) 가구주 (家口主, Head of Household)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가족 및 핵가족

(10) 가족 (家族, Family)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가 부양할 경제적인 책임하에 있는 혈연 관계인, 배우자 및 양자를 말한다.

(11) 핵가족 (核家族, Family Nucleus)

한 가구내의 결혼한 부부 또는 양친과 그들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를 말한다.

### 5. 거 처

#### 1. 주 택

##### 가. 일반주택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나. 비거주용 영구건물내의 주택

2. 주택이외의 거처

가.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나. 집단시설

다. 임시수용시설

라. 임시주택

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거처

(12) 거처 (居処, Living Quarters)

사람이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 개축 또는 개조된 구조물 또는 거주용 구조물은 아니나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장소를 말한다.

\* 거처의 구비요건

(가) 분리성 및 독립성

분리성 및 독립성이란 거처로서 구비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로서 벽, 울타리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붕이 덮여져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이 공동사회내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격리되어 취사, 취침등을 할 수 있거나 기후 또는 자연환경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구내는 분리되었다고 보며, 거리 또는 공공복도, 통로, 대지등에 직접 연하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거나 거처의 점유자가 남의 구내를 통하지 않고 거처를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구내를 독립

되었다고 본다.

(나) 영구성

거처란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거주용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이거나 거주용은 아니나 조사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  
는 자연보호처야 된다.

(다) 거주성

거처란 원칙적으로 거주용이든 비거주용 거처이든 현재  
거처로서 점유되고 있어야 한다.

(13) 주 택 (住宅, Housing Units)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가 거주하기 위한 또는 거주용은 아  
니나 하나의 가구가 거처로서 점유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분  
리되고 독립된 거주장소를 말한다.

\* 주택의 구비요건

1. 영구성
2. 하나이상의 방과 부엌
3. 독립된 출입구

(14) 일반주택 (一般住宅, Conventional Dwellings)

한가구가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 개축 또는 개조된 영구건물  
또는 영구건물 내의 일부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장소를 말한다.

(15) 단독주택 (单独住宅, Detached Private house)

원칙적으로 한 가구만이 살도록 건축 또는 개조된 별도주택



을 말한다.

(16) 연립주택 (聯立住宅. Row House, Multi-Units house)

두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붕으로 연립하여 건축되었고 출입구가 각각 가구별로 독립하여 사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17) 아파트 (Apartment House)

하나의 건물내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분획되어 있으며 각출입구가 공용의 복도나 층계로 통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8) 비거주용 영구건물내의 주택 (非居住用 永久建物內住宅. Housing Units in Permanent Buildings not intended for Human Habitation)

거주용으로 건축, 개축 또는 개조되지 않은 영구 건물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한가구가 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19) 주택이외의 거처 (住宅以外의居處. Living Quarters other than Housing Units)

대단위 개별인의 집단이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 개축 또는 개조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장소를 말한다.

(20)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Hotels and other Lodging Houses)

수수료에 의하여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영구 구조물로서 6인 이상의 숙박인 또는 하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1) 집단시설 (集團施設. Institutions)

공공 또는 개인들의 공동목적 또는 이익등에 의해 유대가 맺어진 통상 대집단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영구구조물 내의 모든 구내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병원, 군대영구막사, 기숙사, 수녀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양로원, 고아원, 사찰등

(22) 임시수용시설 (臨時收容施設. Camps)

공동활동 또는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할기 위하여 만든 숙박설비를 말한다.

군야영막사, 난민수용소, 공사장막사등

(23) 임시주택 (臨時住宅. Marginal Housing Units)

한가구가 살도록 축조되었거나 현재 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거주장소이나 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를 말한다.

동굴, 판자집, 천막집, 이동주택

6.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1. 취업자 (일시휴직포함)

2. 실업자
- { 신규실업자
  - { 구직실업자
  - { 비구직실업자

(24) 경제활동인구 (經濟活動人口,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중 경제재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25) 취업자 (就業者, Employed Person)

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중 임금, 급료, 수수료, 이익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모든 사람을 말하며 일시휴직자도 포함한다.

(26) 일시휴직 (一時休職, Temporarily Absent)

취업자로서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잠시 이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자기 또는 가족의 병이나 부상으로 일시 쉬었을 때

나. 휴가, 연가, 훈련, 근무소집등으로 일시 쉬었을 때

다. 노동쟁의 파업등으로 일시 쉬었을 때 (유급인 경우)

라. 일기불순, 기계고장등으로 잠시 조업을 중단하여 쉬었을 때

단,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월이상 이직(무급)하고 있는 경우와 사업을 하는 사람이 3개월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7) 실업자 (失業者 Unemployed Person)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 중 전혀수입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8) 신규실업자 (新規失業者 New Seeking Workers)

이전에 전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새로운 노동력의 일원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 중 수입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비경제활동 인구

1. 가사자
2. 학생
3. 연로자
4. 상병자
5. 불로소득자
6. 기타

(29) 비경제활동인구 (非經濟活動人口 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성별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중 어느 하나 또는 둘다 가지고 있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일정기간중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0) 가사자 (家事者 Home Makers)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가사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며 보수를 받는 가사 종사자는 제외한다.

(31) 학생 (學生 Students)

성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정규 교육 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2) 연로자 (年老者 Olds)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아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3) 상병자 (傷病者 Sick or deformed Person)

성별에 관계없이 선천성 또는 후천성 불구자, 장기간 질병자 및 허약체질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4) 불로소득자 (不勞所得者 Income Recipients)

성별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투자소득, 특허사용료 및 이전의 경제활동으로 부터 받는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5)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 (其他 Others)

성별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공원조나 사적인 보조를 받는 사람 및 상거 여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7.3 교육정도

1. 취 학 { 재 학  
          { 중 퇴  
          { 졸업

### 2. 불취학

(36) 교육정도 (教育程度 Educational Attainment)

국가의 교육제도하에서 자기가 이수한 최종학교의 최고학  
년을 말하며 재학, 중퇴, 졸업, 불취학으로 구분된다.

(37) 취 학 (就學 Attending School)

주야간 및 공사립을 불문하고 정규교육 기관에서 체계적  
인 교육을 받은 또는 받고 있는 것을 말한다.

(38) 불취학 (不就學 Not Attending School)

문자해득 여부를 불문하고 학령전 교육 기관을 제외한  
정규교육 기관에 취학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9) 재 학 (在學 Attendance)

현재 정규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거나 방학 또는 특수사  
정으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단, 1 학기 이상의 휴학은 제외한다.

## 8. 기술자 및 기능공 (공학분야)

1. 기술자

2. 기술공

### 3. 기능공

#### (40) 기술자 (공학) (技術者 Engineer)

공학분야에서 순수 및 응용학술연구작업을 수행하고 과학적 지식의 실제적 적용을 개발하거나 또는 관련분야에서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공을 지휘 감독하는 능력을 갖춘 이공계대학 졸업자와 이공계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자 및 정부에서 공인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유자를 말한다.

- (1) 건축 기술자 및 도시계획가
- (2) 토목 기술자
- (3) 전기 및 전자기술자
- (4) 기계 기술자
- (5) 화학 기술자
- (6) 금속 기술자
- (7) 광산 기술자
- (8) 산업 기술자
- (9) 기타 기술자 (한국표준 직업분류 029 항목)
- (10) 측량 기술자
- (11) 비행기 및 선박고급승무원

#### (41) 기술공 (공학) (技術工 Engineering Technician)

공학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상 이해하고 있는 입증된 기술 또는 전문적 기술자가 특히 지시한 기술을 책임있게 응

봉할 수 있으며 기술자의 지휘 또는 정립된 공학기술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능공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공계 초급대학(전문학교 포함) 졸업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및 정부에서 공인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소유자를 말한다.

(1) 제도자

(2) 토목공학 기술공

(3) 전기 및 전자기술공

(4) 기계 기술공

(5) 화학 기술공

(6) 광산 기술공

(7) 금속 기술공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술공 (한국표준직업 분류 039 항목)

(42) 기능공(技能工 Crafts man and Operative)

제조, 광업, 건설, 운수, 기계조직 및 정비수리 활동 등의 분야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8/9 생산 및 관련



용사자 운수장비 조직원 (단순 노무자 제외)

## 9. 농 업

### (43) 농업활동 (農業活動 Agricultural Activities)

모든 농작물과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 곡식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과수작물 재배 및 생산활동
2. 판매를 위한 꽃 및 관상식물 재배
3. 가축과 가금의 사육 및 가축 생산품의 생산활동
4. 누에, 꿀벌등의 사육과 그 생산물의 생산활동

### (44) 농업사업체 (農業事業體 Holding)

농업생산을 위해 하나의 기술단위아래 운영되는 모든 토지와 토지는 갖지 않았으나 가축 또는 가축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제 단위를 말한다.

기술 단위라 함은 동일관리아래 노동력, 기계 및 동물과 같은 동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단위를 말한다.

동일 기술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몇개의 단위에 있어서 구획된 지역이 개인에게 할당되고 그 지역의 생산물을 분배받거나, 명시된 수의 가축이나 가금을 개인에 할당하고 그의 생산물을 분배 받는 경우 그러한 각각의 지역이나 할당된 가축은 하나의 농업사업체로 간주한다.

둘 이상의 사업체가 동일소유하에 있고 일반적인 지시를 받고 있으나 타인에 의해서 직접 관리 운영되면 별도의 농업사업체로 간주한다.

- (45) 농업경영자 ( 農業經營者 Holder )  
 농업사업체 운영에 기술적인 책임과 경제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농업사업체가 고용 관리자를 두어 기술적 책임과 경제적인 책임을 위임하여 운영되고 소유자가 직접경영이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리자를 농업경영자로 간주한다.
- (46) 농 가 ( 農家 Farm Household )  
 가구원이 농업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또는 동업자 가구로서 가계의 주된소득이 농업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를 말한다.
- (47) 농업종사자가구 ( Farm Workers Household )  
 가구의 일원이 농업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그에 고용되어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 10. 배우 관계

1. 미 혼
2. 유배우
3. 사 별
4. 이 혼

- (48) 배우관계 ( 配偶關係 Marital Status )  
 관습 또는 혼인법과 관련한 남녀의 신분관계이나 혼인법과는 관계없이 15세 이상 남녀의 사실상의 신분관계를 말한다.
- (49) 미 혼 ( 未婚 Single, never-married )  
 한번도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50) 유배우 ( 有配偶 Married )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혼 즉  
내연의 관계나 일부 다처의 경우도 포함한다.

(51) 사 별 ( 死別 Widowed and not remarried )

배우자의 한편이 사망하고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  
한다.

(52) 이 혼 ( 離婚 Divorced and not remarried )

배우관계의 최종적인 해소로서 재혼할 수 있는 남편과 아  
내의 분리를 말한다.

단,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되더라도 실제적관계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사실혼의 상  
태가 해소되어 현재 재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 11. 어 업

(53) 어업활동 ( 漁業活動 Fishing Activities )

원양 및 연근해 해면 또는 내륙수로에서 수산동식물의 채  
포, 채취 및 양식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물고기 채포활동
2. 조개류 ( 해조류 포함 ) 포획 및 캐취 활동
3. 해녀 등의 잠수작업
4. 양식업의 시설설치, 절거, 재료 및 어장감시활동
5. 정치망의 설치, 대체 및 어장감시활동

6. 저인망의 해상 및 육상작업

7. 양식시설의 운영

(54) 어업사업체 ( Fisheries )

판매를 목적으로 연근해 및 원양해면과 내륙수로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고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수산동식물의 양식이라 함은 인공적설비를 갖추고 굴, 미역, 김, 뱀장어, 송어등을 생육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55) 어가 ( Fishery Household )

가구의 일원이 어업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또는 동업자 가구로서 가계의 주된 소득이 어업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를 말한다.

(56) 어업종사자가구 ( Fishing Workers Household )

가구의 일원이 어업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그에 고용되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 12. 원재료 및 최종제품

1. 소원재료
2. 제품원재료
  - 가. 구성부품
  - 나. 중간제품
  - 다. 보조재료

### (57). 원재료 ( 原材料 Material )

농림수산업 및 광업의 생산제품을 포함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체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을 말한다.

### (58). 소원재료 ( 素原材料 Unprocessed Material )

농림수산업 및 광업부문에서 생산된 원재료로서 사업체에서 구입하여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공되는 품목을 말한다.

### (59) 제품원재료 ( 製品原材料 Processed Material )

제조공정의 어느 단계를 거쳐 가공되었으나 다시 다음 단계의 공정에 사용되는 품목을 말한다.

### (60) 구성부품 ( 構成部品 Component Parts )

완성된 형태 그 자체로 제품에 장치되고 직접적으로 조립물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품목을 말한다. 즉, 제조공정에서 더 이상의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를 받지 않는 품목이다.

(61) 중간제품 (반성제) (中間製品 Semifinished Goods)

이미 제조공정의 어느 단계를 거쳐 가공되고 다른 공정에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있는 품목 또는 특정사업체의 최종제품이나 다시 가공 또는 제조되는 품목으로서 그 자체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것을 말한다.

(62) 보조재료 (간접품목) (補助材料 Auxiliary Materials)

사업체에서 통상 구입하는 품목으로 제조과정에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1. 철삭유, 윤활유, 세척액
2. 냉 마
3. 공업용수
4. 포장재료
5. 건설재료 (건설업 제외)
6. 사무용 비품
7. 기계 및 장비수선비품
8. 기타 관리용 비품 소도구 등

(63) 최종제품 (最終製品 Finished Goods)

최종제품이란 산업 또는 가구에서 최종으로 이용 또는 소비되는 완성재와 사업체에서 다음 단계의 가공 또는 제조에 소비하기 위한 원재료가 되는 제품을 말한다.

### 13. 임 금

(64) 임금과 급여 (賃金·給料 Wage and Salaries)

피고용자라는 위치에서 받는 보수 전체를 말한다.

(65) 직접임금과 급여 (Direct Wage and Salaries)

작업한 시간 또는 수행한 작업에 따라 피고용자에게 지불된 보수를 말한다.

가. 시간제작업자의 정액지급금

나. 시간제작업자의 장려금

다. 단가제작업자의 근로소득(시간외 수당 제외)

라. 시간외, 야간교대 및 공휴일작업의 특근수당

마. 판매원의 구전

바. 기타(오염, 위험 및 불안수당, 임금 체계상 보장된 지급금, 생계수당 및 기타 정규수당)

(66) 근로소득 (勤勞所得 Earnings)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간격에서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에 따라 피고용자가 받는 모든 현금 및 현물보수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세금, 사회보장 및 연금계획에 대한 피고용자의 분담금, 생명보험료, 조합비 및 기타 피고용자의 의무적 지출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하며 유급휴가비도 포함되나 피고용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및 연금계획에 따라 지불되는 고용자의 분담금과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용자가 받는 손해금을 제외한다.

가. 직접임금 및 급료

나. 작업하지 않은 시간(공휴일, 연가 등)의 보수

다. 보너스 및 사례금

(1) 계절말 또는 연말 보너스

(2) 휴가비(유급휴가에 대한 보충금)

(3) 이익분배 보너스

(67) 피고용자 보수 (被雇用者 報酬 Compensation of Employees)

피고용자가 고용자에게서 지급받는 모든 종류의 보수 즉 임금 및 급료, 사회보장분담금, 재해보험 및 생명보험 기타 피고용자에 관련된 같은 종류의 제도에 대한 고용자의 분담금을 말한다.

가. 직접임금 및 급료

나. 작업하지 않은 시간의 보수

다. 보너스 및 사례금

라. 사회보장, 연금 등(피고용자의 분담금에 의한 것 제외)

마. 식품, 음료, 연료 및 기타 현물보수

바. 주택 및 임대보조금

(68) 노동비용 (勞動費用 Labour Cost)

고용자(또는 법인기업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용한 피고용자와 연관해서 직접 간접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가. 직접입금 및 급여
- 나. 작업외 시간의 보수
- 다. 보너스 및 사례금
- 라. 식품, 음료, 연료 등 기타 현물보수
- 마. 고용자가 부담한 피고용자의 주택비
- 바. 고용자부담의 사회보장 지출금
- 사. 직업훈련 비용
- 아. 복리서어비스 비용
- 자. 기타 노동비용 (작업장간의 교통비, 작업복 비용, 판매비 등)
- 차. 노동비용으로 간주되는 세금

(69) 현물입금과 급여 (現物賃金, 給料 Wage and salary payments in Kind)

소비자로서 피고용자에게 명백하고 주로 이익을 주는 무료 또는 현저하게 절감한 실비가격으로 제공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고용자의 순비를 말한다.

- 가. 식 품
- 나. 음 료
- 다. 담 배
- 라. 의 복 (평상복 제외)
- 마. 숙박설비

단, 고용자가 그들의 피고용자와 더불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즉, 작업상의 오락, 의료검사, 운동 및 기타 오락설비, 여행, 흥행 및 유사비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서 고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70) 임금율 (賃金率 Wage Rates)

정상작업기간에 있어서 시간당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임금과 생계수당 및 기타 보장되고 규칙적으로 지불되는 수당만을 포함하고 시간외 수당, 휴일작업 및 야간교대수당, 보너스 및 사례금, 가족수당 및 기타 고용자부담의 사회보장 지출금은 제외하며 특히 정상율에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현물보수도 제외된다.

## 14. 종 사 자

(71) 종사자의 지위 (從事者の地位 Status)

취업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개별인의 지위를 말한다.

종사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고용자
- (2) 단독자영종사자
- (3) 무급가족종사자
- (4) 피고용자
- (5) 기 타

- (72) 고용자 (雇用者 Employer)
-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독립적으로 전문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사람 이상의 피고용자를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 (73) 단독자영종사자 (單獨自營從事者 Own-account Worker)
-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독립적으로 전문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용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74) 무급가족 종사자 (無給家族從事者 Unpaid Family Worker)
- 동일 가구내에 살고 있는 혈연관계인(가족)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즉 작업량에 따라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금과 급료)없이 적어도 정상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작업한 사람을 말한다.
- (75) 피고용자 (被雇用者 Employee)
- 공공 또는 민간기업(또는 사업체)에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임금 및 급료 등의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76) 종업원 (從業員 Engaged Persons)
- 자영종사자 및 활동에 참여하는 동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업체 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수수료만 받는 중역, 이사회 임원은 제외한다.

종업원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자영종사자
- (2) 무급가족 종사자
- (3) 피고용자

(77) 자영종사자 ( 自營從業者 Working Proprietors )

피고용자의 고용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업무에 적극 참여하는 경영자와 동업자를 말한다.

(78) 생산종업원 ( 生産從業員 Operative )

제화 생산사업체 ( 농림수산업 제외 ) 의 피고용자로서 생산 및 관련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대한 보조활동에 종사하는 유사형태의 피고용자와 트럭운전, 수선 및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유급역원 및 이사, 실험 및 연구종사자, 사무, 장부기록, 관리감독, 판매원 등과 같은 관리적, 기술 및 사무직원과 이들을 보조하는 경비원, 급사, 사환, 승용차운전자, 수위등은 제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종업원은 다음과 같다.

- (1) 제조 가공 및 조립공
- (2) 생산공정기록 및 작업 감독원
- (3) 공장사환, 화부 및 공장청소직원

(4) 창고자원, 포장공, 수선공

(5) 트럭운전자, 수선공 및 정비공

\* Operative의 직업적 정의

Operative는 숙련공 (Crafts man)이나 만능인 (All-roundman)과는 다른 개념으로 통상 자동 또는 반자동식의 특수한 기계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비교적 좁은 범위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며 대부분 직업훈련을 자주받고 하나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자주 이동한다.

## 15. 주가구 및 동거가구

(79) 주가구 (主家口 Principal Household)

하나의 주택내에 한가구 이상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점유상태에서 그 주택을 대표하는 가구를 말한다.

(80) 동거가구 (同居家口 Roomer's Household)

하나의 주택내에 두가구 이상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말한다.

## 16. 출생, 사망 및 관련개념

### (81) 출생 (出生, Live Birth)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의 생성물이 그의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 또는 추출된 것을 말하며 그렇게 분리된 후 태아의 절단 또는 태반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고 호흡을 하거나 기타 모든 생명의 증좌, 즉 심장의 박동, 태아의 진동 또는 수의근의 명료한 움직임등이 나타날때 그러한 출산의 각 생성물은 출생으로 간주한다.

### (82) 사망 (死亡, Death)

출생후 어느 시기에 생명의 증좌가 영원히 소멸되는 즉 소생능력이 없는 출생후 생존 기능의 정지를 말한다. 따라서 태아사망은 제외된다.

### (83) 태아사망 (胎兒死亡, Foetal Death)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의 생성물이 그의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 또는 추출되기 전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이라함은 모체에서 분리후 태아가 숨을 쉬지 않거나 또는 어떠한 다른 생명의 증좌 즉 심장의 박동, 태아의 진동 또는 수의근의 명료한 움직임등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가. 초기태아 사망

임신 20주 미만에 사망

나. 중기태아 사망

임신 20 주 이후에서 28 주 미만에 사망  
다. 만기태아 사망

임신 28 주 이후에 사망

(84) 사산(死産, Stillbirths)

만기태아 사망 즉 임신 28 주 이후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

(85) 유산(流産, Abortion)

임부와 관련해서 임신 28 주전 태아사망을 수반한 모든 임신중절을 말한다.

가. 인공유산(Induced Abortion)

임신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수행한 모든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유산을 말한다.

나. 자연유산(Spontaneous Abortion)

인공유산을 제외한 유산을 말한다.

(86) 사인(死因, Cause of Death)

사망을 초래한 또는 그 일인으로 된 모든 질병, 상태 또는 상해와 이들 모든 상태를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87) 원사인(原死因, Underlying Cause of Death)

가. 직접적으로 사망을 초래케한 일련의 병적사상을 유발시킨 질병 또는 상해

나. 치명상을 가져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 (88) 혼인취소 (婚姻取消, Annulment)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자격있는 당국이 혼인을 무효 또는  
 실효로 하는 것이며 상호 혼인하지 않은 신분을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 (89) 입양 (入養, Adoption)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부모의 자녀를 자기  
 의 자녀로서 법적 자유의사에 따라 취적처우를하는 것을  
 말한다.
- (90) 적출 (適出, Legitimation)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갖도록  
 하는 형식적 부여를 말한다.
- (91) 인지 (認知, Recognition).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모든 비적출아(사생아)를 자의적  
 또는 강제적으로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92) 총출생아수 (Total Children Born)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관계는 불문하고 15세이  
 상 여자가 그때까지 살아온 동안 낳은 아이의 총수 즉  
 생존아수와 출생해서 사망한 아수를 말한다. 따라서 태아  
 사망은 제외된다.
- (93) 생존아수 (Children Born Still Living)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관계는 불문하고 15세이  
 상의 여자가 그때까지 살아온 동안 낳은 아이중에서 현



재 살아있는 아이수를 말한다.

## 17. 출생지 및 거주지

(94) 출생지 (出生地, Place of Birth)

본적이나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출생한 국가의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병원이나 자택같은 출생장소와는 다르다.

(95) 상주지 (常住地, Place of Usual Residence)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살고 있거나 계속살것이 예상되는 거주 장소를 말한다.

(96) 발견지 (發見地, Place Where Found at Time of)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각 개별인이 발견된 장소를 말한다.

(97) 전거주지 (前居住地, Place of Previous Residence)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으로 전입하기 바로 이전 상주지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 18. 취업시간

(98) 취업시간

일정기간중 매 임금근로자의 작업시간을 말한다.

(99) 정상 취업시간

일반적으로 법률, 규칙, 단체협정 또는 중재재판에서 정한

취업시간을 말한다.

(100) 실제취업시간

재화 및 서어비스 생산 작업에 실제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가. 정상취업기간중 실제작업시간

나. 정상취업기간중 정상취업 시간외 작업시간

다. 작업장에서 작업이외에 소비된 시간, 즉 작업장의 준비, 수선 및 정비, 도구의 준비 및 청결, 수령, 카드 및 보고서 준비등

라. 작업장 대기시간 즉 작업물 공급의 결핍, 기계고장 또는 사고등으로 작업장에서 대기하여 소비한 시간과 해야할 작업은 없으나 고용 계약에 의해 보장된 보수가 지급되는 작업장에서 소비한 시간을 말한다.

마. 작업장에서의 휴식시간 단, 보수가 지급되는 작업외시간(공휴일, 연가, 병가등)과 식사 및 통근시간은 제외한다.

19. 기타 개념

(101) 도시(Urban)

가. 인구 5만 이상의 특별시, 직할시, 일련시 및 읍면의 행정단위지역

나. (가)항 이외 행정단위 지역중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구비한 읍, 면의 행정단위 지역

(1) 인구 30,000이상

(2) 인구밀도 (1km<sup>2</sup>당) 1,000명이상

(102) 문맹자 (文盲者, Illiterate Person)

10세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해력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간단한 사항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을 말하며 난지 숫자나 지기 이름만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읽을 줄은 알지만 쓸 줄을 모르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의식상 꺾절만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도 포함한다.

(103) 방 (房, Room)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싸여 있고 적어도 1.8m (6)이상의 높이와 3.3㎡ (1坪) 이상의 넓이를 가진 거처내의 한 공간을 말한다.

통로, 베란다, 로비, 남하, 복욕실, 부엌 및 화장실은 방의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04) 준가구 (準家口, Institutional Household)

학교, 병원, 종교단체의 기숙시설, 군사시설, 행형시설등 일정한 거처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이인 이상의 개개인의 보임을 말한다.

(105) 중화학공업 (重化学工業, Heavy Manufacturing)

중화학공업이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고 고도의 기술

을 요하는 산업으로 주로 생산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석유 및 석탄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 1차 금속제조업과 금속제품 및 기계제조업을 말한다.

\* 중화학공업의 업종범위 ( 한국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항 )

1.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3.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4. (353) 석유 정제품
5. (354) 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6.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7.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8. (369) 기타 광물제품 제조업
9. (371) 제 1차 철강 제조업
10. (372) 제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1. (381)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12. (382) 기계제조업 (전기기기 제외)
13. (383)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14. (384) 수송장비 제조업
15. (385) 사진, 과학기계 기구 과학적 측정 및 조정용 기계기구 제조업

(106) 직업 (職業, Occupation)

직업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를 말한다.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계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확한 주기를 갖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전세금, 월세금), 소작료, 권리금등과 같은 재산 수입을 얻는 경우
- (2) 연금법이나 사회 보장에 의한 수입을 얻는 경우
- (3) 경매등에 의한 배당금의 수입을 얻는 경우
- (4) 보험금수취, 차용 또는 자기 소유의 토지나 주권을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 (5) 자기 집에서 가사활동
- (6) 정규 주간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 (7) 법률위반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즉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수형자의 활동들을 말한다.  
한사람이 두가지일에 종사할 경우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취업 시간이 많은 직업을 택한다.
  - 2) 위에 경우를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한다.

- 3) 위에 두가지 경우가 분명치 못할 경우에는 조사시  
최근의 직업을 택한다.